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정관

2010. 06. 11일 정관 변경

2010. 08. 02일 정관 변경

2012. 12. 13일 정관 변경

2014. 11. 17일 정관 변경

2018. 02. 14일 정관 변경

2019. 11. 08일 정관 변경

2020. 03. 10일 정관 변경

2021. 09. 08일 정관 변경

2022. 11. 30일 정관 변경

2026. 07. 08일 정관 변경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및 선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보육, 묘지(장사시설포함), 한센병 복지, 국민 생활향상 및 문화사업, 방송·광고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학술연구, 음식·숙박(호텔)사업, 생태환경농업연구, 박물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천주교회의 설치 운영 및 선교에 필요한 사업

2. 성직자 양성 사업

3. 수도원 설치 운영

4. 교육사업(평생교육 및 청소년수련사업 포함)

5. 의료사업

6. 사회복지사업(아동·청소년·노인(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등 포함), 여성, 장애인, 노숙인사업,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

7. 한센병 환우 생활향상 및 복지 사업

8.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
9. 교회묘지 및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10. 방송·광고사업
11. 신재생에너지사업
12. 국민생활 향상 및 문화사업
13. 간이어선 수리소의 설치 및 운영
14. 국내외 인권 평화 증진사업
15. 학술연구
16. 음식·숙박(호텔)사업
17. 생태환경농업연구 및 지원사업(농어민,대북먹거리지원사업 등)
18. 박물관 사업(유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기타관련 자원 및 협력사업 등)
1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원만히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2. 영농사업
3. 영림사업
4. 신재생에너지사업

제 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3인

제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행정기관에 보고한다.
- ②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장이 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 ① 당연직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9조(대표권의 권한)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1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교회법에 의하여 교구장직을 대행하는 자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이 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 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5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면,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삭제 < 2006. 9. 19 >

제16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정관 제26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교회의 현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9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장 사무부서

제2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법인 및 산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주무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업무보고) 삭제 < 2006. 9. 19 >

제2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